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제도의 주요 쟁점과 사업 계획 수립 방안

2015. 1. 13(화)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한상욱(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CONTENTS

주제발표 취지 및 목적 01

지역개발제도의 주요 내용 02

지역개발 계획 및 사업 주요내용 03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 04

사업 계획 작성방안 05

01 주제발표 취지 및 목적

01 주제발표 취지 및 목적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취지 : 과잉 · 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 · 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
- 경위 : 국회 통과(14.4)→ 국무회의 의결(14.5)→ 지자체 설명회(14.12)→ 시행(15.1)

○ 관련 법 및 계획체계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 계획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준비 미흡

- 5개의 지역 · 지구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
-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 선도지구 도입
- 지자체 ·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지원 강화

○ 종합계획 수립 → 사업 추진의 보편적 형식과 선추진 공모사업 형식 도입 등 2-track 운영

- 5개의 지역 · 지구제도 통합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요구
- 공모사업은 주민생활 수요밀착형의 전국 공모경쟁체제로 전환

1. 법제 개편에 따른 변경내용의 숙지 → 향후, 대응 방안 모색
2. 공모사업의 경우, 짧은 계획수립 기간 대비, 효율적인 계획수립 방안 모색

02 지역개발제도의 주요 내용

02 지역개발제도의 주요 내용

2.1 체제 변화 주요 내용

○ 5개 지역개발제도를 단일 체제로 통합

- 법률 및 계획 : 2개 법률 → 1개 법률 / 5개 계획 → 2개 유형별 계획
- 지역지구 : 5개 지역지구 → 1개 구역

※ 기존 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명맥은 유지

(개발형 : 광역개발권, 특정지역 → 거점형 / 낙후지역형 :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낙후형)

○ 당초 법률상 지역지구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개발사업 단위로 변경(사업구역)

- 특정지역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1,036.73㎢, 4시4군)
- 개발촉진지구 : 금산군(131.64㎢), 부여군(12.7㎢), 서천군(110.44㎢), 예산군(35.6㎢)

※ 개발행위가 없는 지역지구 지정의 불필요 ↔ 내포문화권으로서의 상징성 상실 우려

당초

법	계획	지역지구
지역균형 개발법	광역개발사업계획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특정지역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특별법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변경

법률/계획
지역개발지원법.지역개발계획
거점형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낙후형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2.2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마련

○ 사업 추진을 지자체 · 민간 주도 체계로 전환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로 이관
-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3단계 사업을 일괄처리 가능토록 단축

○ 사업효과가 큰 전략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투자 선도지구 제도 도입

- 투자선도지구 : 지역개발사업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지정 및 종합지원
- 낙후형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에 지정
- 거점형 : 산업 · 문화 · 관광 · 물류 · 교통 등 거점지역과 연계하여 지정(기존 계획상 비낙후지역)

○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열악한 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강화

○ 기추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인정

- 기존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계획으로 간주(재정지원중인 사업은 사업종료까지 지원)

※ 단, 신규사업 신청시 기존 지역개발사업 변경 선이행

○ 사업지원범위의 확대 ↔ 실현가능성 검증, 사업관리 책임성 요구, 모니터링 등 평가기준 세분화

- 투입 범위 확대(예, 도로 → 기반시설), 규제완화, 특례규정 등

지역개발 계획 및 사업 주요내용 03

03 지역개발 계획 및 사업 주요내용

3.1 지역개발계획(낙후지역형, 거점지역형)

- **수립권자 : 도지사, 승인권자 : 국토부장관 / 지정기간 10년**
- **대상 : 성장촉진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특정지역**
  - 낙후지역형(성장촉진지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 6개 시 · 군(서천, 금산, 부여, 청양, 예산, 태안)
  - 거점지역형(특정지역-낙후지역) : 5개 시 · 군(보령, 아산, 서산, 당진, 홍성)
- **수립방법**
  - 기존사업 재검토
  - 신규사업 계획 수립 (* 신규사업계획 수립시 기존사업 재검토 및 변경 필수)
- **국비지원사항**
  - 낙후지역형 : 성장촉진지역(국토부) + 특수상황지역(행자부) / 2016년 이후 신규사업 신청가능
    시군별 200억원(지역활성화 지역 300억원)
  - 거점지역형 : 지특회계 시도자율편성분
- **우선사업**
  - 낙후지역형 : 도에서 우선 순위 결정
- **특이사항 : 도 우선순위 결정, 실현가능성 검증결과 사전 작성, 국토부 객관성 · 타당성 검증**

3.2 투자선도지구(낙후지역형, 거점지역형)

○ 수립권자 : 도지사, 승인권자 : 국토부장관 / 지정기간 10년

○ 대상 : 낙후지역과 낙후지역 외

- 낙후지역형(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 서천, 금산, 부여, 청양, 예산, 태안
- 거점지역형(특정지역-낙후지역) : 보령, 아산, 서산, 당진, 홍성,

○ 지정요건

- 낙후지역형 : 500억투자, 100인 고용, 3만㎡이상 / 거점지역형 : 1,000억 투자, 300인 고용, 10만㎡이상

○ 지원내용

- 공통지원 : 규제특례(건폐율, 용적율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의제 등)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부담금 등 4종)
  자금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 보조,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임대료 감면 편의시설 설치자금 지원
- 낙후지역형 : 조세(법인세, 소득세 감면), 국유재산 임대료 20% 이내 감면

○ 응모자격 및 한계

- 응모자격 : 도지사 /응모한계 : 최대 5개소(거점형 1개소, 낙후형 1개소 필수)
- 공모절차 : 지자체공모(15.1) – 공모접수(15.3) – 심사(15.5) – 시범지구(15.6) –지구지정(16년초)

3.3 지역활성화 지역

○ 지원내용

- 일반성장촉진지역 포괄보조 차등, 우선지원(300억원)
- 소규모 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 공모 대중교통지원

○ 대상 : 성장촉진지역 30% 범위(기준 : 공통지표 + 특성지표(충청남도 지표변경 가능))

구분	공통(60)					특성지표(40)							
	GRDP (백만원)	재정력 지수 (p)	지방소득세 (백만원)	근무 취업인구 변화율 (%)	평균 인구변화율 (%)	재난 · 재해 (회)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65세 이상 인구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인 (명)	비율 (%)
금산군	1,728,296	18.7	46,848	0.97	-0.83	145	10.37	1.80	1.10	0.19	13,670	24.66
부여군	1,600,735	20.9	43,325	-0.04	-2.05	181	-	-	-	-	19,532	26.92
서천군	1,616,421	19.4	34,748	0.91	-2.08	169	-	-	-	-	16,911	28.94
청양군	743,134	17.5	20,741	0.36	-2.53	66	-	-	3.09	0.65	9,704	30.18
예산군	1,815,760	26.4	57,997	0.75	-2.23	156	-	-	2.73	-	20,480	24.04
태안군	1,531,143	19.2	57,075	-0.33	-1.97	122	-	-	-	-	15,221	24.39

주)본 자료는 예비 탐색용임. 산출방법 및 가중치 부여, 특성지표 설정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4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 대상 : 성장촉진지역

◦ 지원규모 : 최대 30억원, 사업유형별 세분화

- 기초지자체당 1개로 제한(3억원 미만 사업 미포함시 최대 2개)
- 사업기간 : 3년(부득이한 경우 5년 연장)
- 절차 : 신청(15.3) – 서면평가(1.5배수)–현장평가–사업발표회(15.4)–집행(16~)
- 지원개수 : 15–35여개(2016)

구분	3억원 미만	3–10억원	10–30억원
내용	지역역량강화사업 교통 등 생활복지사업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	소규모 기반시설 신설
지원쿼터	20개 내외	10개 내외	10개 내외

◦ 대상사업

- 네거티브방식(제외사업 외 공모지원 가능) – 중복사업,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사업, 타당성 없는 사업 등
- HW + SW(지역산업부문, 지역경관부문, 생활복지 기반조성 부문, 체험관광부문 등)

03 지역개발 계획 및 사업 주요내용

3.4 지자체별 지원 대상 여부 종합

구분	지역개발계획(선도지구)		지역활성화지역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비고
	낙후지역형	거점지역형			
지원액	시군당 200억원	지특회계내 시도자율편성분	(시군당 200억원) +100억원	최대 30억원	
시행연도	15년 계획수립 및 승인시 16년 이후			2015년 상반기 공모 2016년 지원	기존사업 지원 신규사업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당진시		○			
금산군	○		△	○	
부여군	○		△	○	
서천군	○		△	○	
청양군	○		△	○	
홍성군		○			
예산군	○		△	○	
태안군	○		△	○	
비고	계획수립 필요 (시범지구 대응 필요)	계획수립 필요 (시범지구 대응 필요)	향후 지원대상 충청남도 검토 시행	사업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필요	

04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

04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

4.1 지역개발계획 관련 현황(개촉지구 + 신발전지역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 현황 : 132개 사업, 37,915억원 (낙후지역형 69개사업, 31,511억원 / 거점지역형 63개사업, 6,404억원)

- 신발전지역 : 12개 사업, 19,711억원(국비 1,818억원) / 지원내역 없음
- 개발촉진지구 : 57개 사업, 11,800억원(기반시설 26개 사업, 2,205억원, 국비 1,832억원)
  - 금산 : 16개 사업, 3,184억원(기반시설 8개 사업, 638억원, 국비 503억원)
  - 부여 : 12개 사업, 1,668억원(기반시설 5개 사업 370억원, 국비 370억원)
  - 서천 : 17개 사업, 2,911억원(기반시설 7개 사업 747억원, 국비 515억원)
  - 예산 : 12개 사업, 4,037억원(기반시설 6개 사업 450억원, 국비 444억원)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 63개 사업, 6,404억원(기반시설 10개 사업 1,261억원, 국비 800억원)

○ 기 계획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사업 개선 필요(시군당 지원액 대비 투자 효율성 배가 위함)

- 기추진 개발촉진지구 : 청양, 홍성, 태안, 보령
- 공정률 : 개촉지구 40%대, 특정지역 20%대 국토부 내부적으로 개선 대상 지적
- 지적사항
  - 제도적 개선 : 유사중복분산 투자 경향 / 하드웨어 중심 / 내생적 발전 지원 부족
  - 사업추진상 : 실현가능성 부족 사업 대부분, 사업추진 지연 및 미추진, 차별화된 계획수립 미흡

04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

4.1 지역개발사업관련 지원 대상(#참고자료)

◦ 법제55조(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낙후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낙후도 ·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58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도로 ·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개발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가.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 · 공원 · 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 공급시설
라.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 문화체육시설
마. 하천 · 유수지(遊水池) ·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2 지역개발계획 관련 – 검증절차 대응

○ 기본검증 : 정책부합성, 계획의 충실성 검토

-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해당 지역개발제도의 정책적 취지 부합 여부
- 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검증이 불가능한 사업은 부적합으로 판단하여 검증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현성 검증 : 검증항목별 심층적으로 검증

- 세부항목 : 정책부합성, 입지적합성, 사업시행 역량, 수요 확보 및 창출 가능성, 지역발전효과 등
  - 입지적합성 : 개발대상지의 환경보호 관련 규제 저촉 여부, 토지용도 등
  - 수요 확보 및 창출가능성 : 사업시행자 확보, 사업시행자의 역량(토지확보 등)
  - 재원조달계획 현실성
- 절차 우선검토사항 : 사업시행자 확정, 사업대상지 확보, 신뢰할만한 재원조달 계획수립
  차순위 검토사항 : 수요 확보 가능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규모와 내용 수립 여부

○ 사전 검증 항목 설정 및 계획수립 시 적용 → 세부항목 구체화 필요

- 타법률에 의한 계획수립 여부 : 산업단지, 관광단지(지구) 등
- 공공성 : 국비지원 여부 및 투입 가능성
- 사업규모 적정성 : 사업비, 사업규모 및 사업구역, 사업기간의 적정성
- 모사업 진척도 : 모사업과 기반시설사업간의 연계성
- 타사업과의 연계성 : 주변지역의 타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가능성

4.3 지역개발계획 관련 – 선도지구 지정 및 사업 유형

○ 지정 목적

-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 지역개발사업 자체, 주변지역의 민간투자 유도

○ 유형 및 지정기준

- 유형 : 낙후지역형 / 거점지역형
- 지정 대상: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 지역개발사업구역이 하나의 개발사업의 성격 : 구역전체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가능
  -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여러 개의 단위개발사업 포함 : 구역 중 단위개발사업만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 지정 기준 : 필수조건
  - 낙후지역형 : 투자금액 500억원이상 or 신규 고용창출이 100인 이상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
  - 거점지역형 : 투자금액 1,000억원이상 or 신규고용창출이 300인 이상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

○ 개발사업 유형

-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형성,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 지역특화 문화 · 관광 개발사업 :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지역경제창출 지원환경 조성사업 : 기업, 투자,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도시환경 보완 및 시설확충과 관련된 사업

4.3 지역개발계획 관련 – 선도지구 지정 기준

○ 지정 필수기준

- 낙후지역형 : 투자금액 500억원이상 or 신규 고용창출이 100인 이상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
- 거점지역형 : 투자금액 1,000억원이상 or 신규고용창출이 300인 이상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

○ 지정 충분 기준 : 하나이상의 지정 기준을 충족

-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기설, 사업계획 확정)
  - 광역, 지역간 간선도로, 지역내 주요간선도로와 인접하여 연계도로에 투입되는 비용 최소화 지역
- 지역특화산업, 문화 · 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 도시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에서 제시한 지역성장 전략 또는 지역육성산업 부합사업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확충과 관련된 개발사업, 지역거점형 또는 지역브랜드 및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사업
- 성장거점으로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지역
  -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예, 산업단지, 가공단지, 항만배후단지, 역세권개발, 기업본사 이전사업(300명 이상),
    지역거점형 문화 · 복지 · 보건 · 의료 사업, 대학의 이전 및 신설 사업 등)
  -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
  - 민간투자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역(MOU, 기업입주 타당성 확보 사업)

4.3 지역개발계획 관련 - 낙후지역형 선도지구 대상사업 예비 검토(산업, 관광)

구분	사업명	사업비	출처	구분	사업명	사업비	출처
금산	금산제2일반산업단지	1,205	개촉,도3차	부여	백제호관광지	4,739	도3차
					홍산지방산업단지	1,307	도3차
	인삼약초체험단지	1,918	신발전,도3차		노인복지단지	673	도3차
서천	홍원항다기능어항	595	개촉	청양	운곡2농공단지	740	신발전
	종천2농공단지	692	신발전				
	금강하구둑관광지	656	신발전		생태체험학습농원(남양)	794	도3차
	춘장대해수욕장관광지	1,146	신발전				
	장항제련소오염토양정화사업	2,990	도3차		정산일반산업단지	630	도3차
	장항항정비	705	도3차				
	비인항개발	506	도3차		칠갑호관광지개발	855	도3차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4,418	도3차				
예산	덕산온천관광지	3,082	개촉,신발전	태안	지구환경보전상징화사업	1,500	도3차
					태안종합에너지특구	4,880	도3차
	예당일반산단	3,604	신발전,도3차		안면도꽃지지구관광지	10,474	도3차
					만리포해수욕장관광지	642	도3차
	예산일반산단	6,387	신발전,도3차		항공레저R&D단지	600	도3차
					안흥항정비	800	도3차
	예산테크노밸리	1,442	도3차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	90,000	도3차
	예산군복합문화복지센터	801	도3차		가로림만신재생에너지관광지	2,855	도3차

주) 본 제시사업은 예비고찰용으로 사업비는 부정확함(기추진 미반영, 사업추진현황 미고려)

4.3 지역개발계획 관련 – 거점지역형 선도지구 대상사업 예비 검토(산업, 관광)

구분	사업명	사업비	출처	구분	사업명	사업비	출처
보령	원산도SevenIsland	3,800	도3차	아산	디스플레이메가클리스터조성	4,322	도3차
	대천해수욕장머드랜드	5,073	도3차		온천건강문화클리스터	2,007	도3차
					아산제2테크노벨리	2,870	도3차
	보령신항물류기지	1,500	도3차		온양중심상권재정비촉진사업	35,000	도3차
					아산에코-테크노파크	7,362	도3차
서산	대산석유화학클리스터조성	3,351	도3차	당진	송산일반산업단지		–
	서산웰빙특구조성	4,812	도3차		송산2일반산업단지		–
	천수만생태국제관광휴양도시건설	2,180	도3차				
	서산공항물류기지	750	도3차		당진1철강산업단지		–
홍성	남당관광지조성	998	도3차				
	홍성일반산업단지	1,383	도3차				
	홍성제2일반산업단지	1,876	도3차				
	내포신도시조성	25,958	도3차				

주) 본 제시사업은 예비고찰용으로 사업비는 부정확함(기추진 미반영, 사업추진현황 미고려)

4.4 지역활성화지역 선정 관련 – 공통지표

○ 국토부 제시 공통지표는 인구와 지역경제 부문에 국한(일반적 추세) → 특화지표 발굴 필요

- 낙후지역 대상 선정을 위한 지표는 인구지표와 지역경제 지표가 공통적인 추세, 압축 추세
- 주요 지표 분야 : 인구 및 고용, 지역경제 + 교통통신, 생활환경, 문화복지, 지방재정 등으로 구성

〈표〉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의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대상공간
보통교부세의 낙후지역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1인당 지방소득세(소득분+종업원분) 각각의 평균 이하 면 중에서 하위 50%	면
개발대상도서	10인 이상 도서	읍·면
접경지역	민통선 이남 20km 읍 · 면 · 동 중 최근 5년 간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에서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미만	읍·면·동
개발촉진지구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소득할 주민세, 재정력지수 중 1개 이상이 하위 30% 미만이면서 사업체종사자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중 1개 이상이 30% 미만	시·군
신활력지역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할 주민세, 재정력지수	시·군
성장촉진지역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할 주민세, 재정력지수, 지역접근도	시·군
예비타당성조사	인구증가율(8.9%), 제조업종사자비율(13.1%), 도로율(11.7%), 승용차등록대수(12.4%), 인구당 의사수(6.3%), 노령화지수(4.4%), 재정자립도(29.1%), 도시적 토지이용비율(14.2%)	시·군

4.4 지역활성화지역 선정 관련 – 특화지표 예시

○ 충청남도만의 특화된 지표 설정 필요

- 정책변화에 따라 성장동력확보 및 생활기반서비스 제공 영역으로 대별 가능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분야(법70조)

1)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 유지 및 보수
2) 교육 · 문화 · 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3)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림업 · 해양업 · 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

○ 지표 설정 : 정책부합성 · 객관성 담보, 측정 및 평가 방법(가중치, Z(T)-score)은 구체화 필요

구분	분야		지표명	측정방법	비고
성장동력확보	주거 및 환경	주거 기반	노후주택 수준	주택수 대비 20년 이전 주택수 비중	
		환경 기반	환경취약 수준	환경오염배출시설수	
	재정 및 산업	재정기반	소득수준	최근 1인당 지방소득세	
		농림어업기반	농어업활동 참여기회	농림어업 및 음식료품제조업 종사자수	적용가능
		지역경제기반	취업기반 수준	2차.3차산업 종사자수 비율	
생활기반서비스 수준	교육 및 문화	교육서비스	교육기회 다양성	사설학원수	적용가능
		문화여가서비스	여가서비스 여건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수	적용가능
		유아교육서비스	유아 교육 여건	인구 대비 유치원 교사수	
		보육 서비스	보육시설 이용 여건	인구대비 보육교사 수	
	교통	교통서비스	대중교통 이용 용이성	1일기준 버스 운행노선 수	적용가능
	관광	관광기반	관광시설 조성 수	관광지 및 관광시설 수	적용가능

05 사업 계획 작성방안

05 사업계획 작성 방안

5.1 선도지구 지정계획서 – 지역개발계획서와 함께 수립 · 제출

○ 경제성에 근거한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계획 요구 (산업, 관광)

구 분	비 고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 1) 목적 : 주변지역 여건, 지구지정으로 인한 효과 2) 효과 : 경제적.사회적.정책적 파급효과 제시 3) 시행기간 : 지역개발사업 구역 사업기간과 동일	상세하게 기술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방법 1) 개발사업 시행자 2) 사업시행방식 3) 사업비(총사업비, 사업구성비) 4) 사업시행기간	
4. 투자대상,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1) 투자대상 : 낙후.거점지역 구분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유형 제시 → 생산기반시설확충, 문화 · 관광개발, 지역경제창출 2) 고용규모 : 지역주민 고용계획 3) 사업내용 : 조감도,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규제 현황도, 용도지역현황도, 개발계획의 내용	2쪽 요약

05 사업계획 작성 방안

5.1 선도지구 지정계획서 – 지역개발계획서와 함께 수립 · 제출

구분	비고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1) 경제적 타당성(B/C) 분석결과 2) 개발수요 분석결과 3) 시 · 도, 시 · 군 · 구의 지원계획(홍보 및 마케팅계획) 4)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 근거	
6. 기대효과 1)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2) 고용유발효과 3)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사항	
7.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1) 총투자비 : 사업비 내역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부대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 2) 재원조달계획 – 자금투입계획, 단계별 투자계획(자체자금, 외부자금으로 구분) 3) 연도별 투자계획 : 연도별 사업비(시설별, 단계별)	물가상승률 5%적용

5.2 지정기준 요구사항 및 전문평가기관 검토의견 강화

○ 지정기준 파악 용 사업계획 요구

-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
  - 투자선도지구와 연계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 계획
  - 투자선도지구와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을 연계하는 연계도로 설치계획
  - 투자선도지구 투자유치 및 인근 주변지역의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 의료 · 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수립시
  - 법 49조에 따른 특례(주택공급)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건설 계획
  - 법 제49조에 따른 특례(주택공급) 이외 해당하는 에 설치하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건설계획

○ 전문 평가기관이 검토 의견 포함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실현가능성
  - 민간투자자 확보 가능성 및 근거
  -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영상태
  - 재원조달 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타당성
  - 민간사업시행자의 투자금 확보 가능성 및 근거
  - 경제적 타당성(B/C분석 결과)
  - 개발수요(입주의향서, 투자의향서 검토)
  - 사업경쟁력(지역개발사업구역 주변의 경쟁사업 유무 및 현황)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파급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 부가가치 · 고용 유발효과)
  - 사회적 파급효과(지역사회 개선효과)
  - 정책적 파급효과(해당지역의 성장전략 또는 육성산업과의 관계)
-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 반영 여부

05 사업계획 작성 방안

5.3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 30억원미만, 3년, 1시군당1사업, 100%국비

- **기본요건 : HW(기반시설) + SW(콘텐츠) 창조 융합사업으로, 주민의 실생활과 관계가 깊은 사업**
- **발굴 : 타부처 지원사업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사업 외의 모든 사업 검토**
  - 민선6기 선거공약중 : 중앙정부 예산확보가 어려움 사업
  - 중앙정부 예산 투입사업 중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사업
  - 기추진 사업 중 상황 변화에 따라 재원의 지속 투입이 필요한 사업
  - 주민의 수요가 높은데, 중앙정부 예산 투입이 어려운 사업
  - 단일사업의 규모 확대 및 주변사업과의 연계 필요에 따른 추가 사업
  - 방치(유휴) 공간을 재활용하여 주민에게 제공코자 하나 중앙정부 예산 투입이 어려운 사업
- **부문 : 지역산업, 경관창출, 생활복지, 체험관광, 지역역량 증진**
  - 지역산업 : 전통시장, 상점가, 창업공방 + 이벤트 + 전시 + 역량강화
  - 경관개선 : 폐철로, 유휴부지, 위험공간 + 주민 쉼터 + 생활체육문화공간
  - 생활복지 : 교통 + 공원 · 탐방로 + 주민쉼터 + 작은도서관
  - 관광 : 주차장 + 캠핑 + 체험시설대여소 + 자전거 보관소 + 기반시설 브랜드화
  - 지역역량 : 지역역량증진대학(공무원, 주민, 전문가)

05 사업계획 작성 방안

5.3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 평가지표 대비 사업계획서 작안사항

- **평가지표 : 타당성, 사업추진가능성, 지속가능성, 참여도, 기대효과**
- **현황 : 일반 현황, 주민조직 역량, 주민수요 중심**
  - 현황 : 인구, 경제, 기반시설, 문화행사, 공동체 현황 등 →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현황 중심 기술
  - 주민 조직 역량 : 학습활동 실적, 거버넌스 구축 실적
  - 수요조사 : 주민 인터뷰, 설문조사
  - 기추진사업 및 연계가능사업 : 기추진 사업, 예정 사업
- **사업계획 : HW계획의 구체화, 주민참여 · 이용활성화 방안**
  - 사업추진 여건 진단 : 법 · 제도적 제약요인(사전이행조치) 검토, 토지이용제약요인 검토
  - 도입가능 기능 · 시설 및 규모 설정 : 유사사례 근거하여 작성(이용수요층 대비 임계규모 산정)
  - 사업계획 : 위치, 사업량, 사업비, 세부사업내역
    – 사업비 :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추진계획 : HW계획의 구체화, 주민참여 · 이용활성화 방안**
  - 투자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후속 연계사업계획
  - 운영관리계획 : 유지관리계획(추진체 및 역할분담), 고정 지출 비용 + 수입 비용

지역 · 지구를 통합하고, 도로 지원 중심 → 기반시설 + SW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낙후도가 심한 시 · 군을 더욱 배려하는 한편, 현장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절차를 두어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